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924호 2013. 2 19(화)

## ◀ 고 시 ▶

-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제2013-26호) ..... 2
- 포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상수도사업소 고시 제2013-1호)..... 17

## ◀ 공 고 ▶

-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3 - 234호) ... 22

회 람									
--------	--	--	--	--	--	--	--	--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3 - 26호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 2. 13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반시설의 정비,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대지의 효율증진
- 기성 시가지내 개발가능지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 도모
-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 형성 유도 및 쾌적한 주택지를 조성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지정 :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50·양덕동 산224번지 일원
- 변경 :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50번지 일원

나. 면 적

- 지정 : 393,585㎡
- 변경 : 393,586㎡ (증 1㎡)

※ 변경사유 : 지적분할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및 동경계 변경(양덕동→장성동)

4. 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 :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조합
- 주 소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62-13번지(3층)

**5. 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1. 5. 31 ~ 2016. 5. 30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 내용 : 붙임****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 관계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 붙임(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054-270-3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결 정 초 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장성3지구	북구 장성동	393,585	증)1	393,586	경고제01-288호 2001.09.25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 1-1-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93,585	증)1	393,586	100.0	
주거 지역	소 계	367,627	-	367,627	93.4	
	제2종일반주거지역	143,943	-	143,943	36.6	
	제3종일반주거지역	223,684	-	223,684	56.8	
자연녹지지역		25,958	증)1	25,959	6.6	지적분할

##### 1-1-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1-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2-1. 교통시설

1-2-1-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3	6,554	85,284	1	279	5,652	6	1,345	20,353	26	4,930	59,279
	변경	33	6,554	85,285	1	279	5,652	6	1,345	20,353	26	4,930	59,280
광로	기정	1	678	6,171	-	-	-	-	-	-	1	678	6,171
대로	기정	1	543	13,903	-	-	-	-	-	-	1	543	13,903
중로	기정	19	4,296	58,842	1	279	5,652	6	1,345	20,353	12	2,672	32,837
소로	기정	12	1,006	6,368	-	-	-	-	-	-	12	1,006	6,368
	변경	12	1,037	6,369	-	-	-	-	-	-	12	1,037	6,369

※ 변경사유 : 소로3-침10 도로연장 정정(3m→34m) 및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정정

##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계		1개노선				6,600 (678)						
기정	광로	3	3	40 (8)	주간선 도로	6,600 (678)	광로3-7	대로1-1	자동차 전용도로	장성 지구	경고제92호 1993.03.16	
소계		1개노선				543						
기정	대로	3	침1	25	집산 도로	543	광로3-3 장성동 산47-3	중로2-침1 장성동 694-2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변경	대로	3	침1	25	집산 도로	543	광로3-3 장성동 산47-3	중로2-침1 장성동 694-5	일반 도로	-		
소계		1개노선				279						
기정	중로	1	침1	20	집산 도로	279	대로3-침1 장성동 산51-9	중로3-침1 양덕동 산224-5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변경	중로	1	침1	20	집산 도로	279	대로3-침1 장성동 산51-9	중로3-침1 장성동 산222-47	일반 도로	-		
소계		6개노선				1,345						
기정	중로	2	침1	15	집산 도로	303	대로3-침1 장성동 694-1	양덕동 산219-1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변경	중로	2	침1	15	집산 도로	303	대로3-침1 장성동 694-4	장성동 690-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침2	15	집산 도로	409	대로3-침1 장성동 산51-8	장성동 730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변경	중로	2	침2	15	집산 도로	409	대로3-침1 장성동 산51-8	장성동 730-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침3	15	집산 도로	307	대로3-침1 장성동 산49	소로3-침1 장성동 산57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중로	2	침4	15	집산 도로	94	중로2-침2 장성동 산51-13	중로3-침2 장성동 698-2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변경	중로	2	침4	15	집산 도로	94	중로2-침2 장성동 산51-13	중로3-침2 장성동 698-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침5	15	집산 도로	172	중로2-침2 장성동 산51-13	중로2-침3 장성동 산58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중로	2	침6	15	집산 도로	60	중로2-침3 장성동 산58	중로3-침10 장성동 산58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 ( )구역 내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계			12개노선			2,672						
기정	중로	3	침1	12	집산 도로	899	광로3-3 양덕동 925-7	중로2-침1 양덕동 산220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변경	중로	3	침1	12	집산 도로	899	광로3-3 장성동 690-59	중로2-침1 장성동 산222-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침2	12	집산 도로	381	대로3-침1 장성동 694-2	중로2-침2 장성동 산54-1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변경	중로	3	침2	12	집산 도로	381	대로3-침1 장성동 694-5	중로2-침2 장성동 산54-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침3	12	국지 도로	163	중로2-침2 장성동 산51-8	중로3-침2 장성동 694-3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변경	중로	3	침3	12	국지 도로	163	중로2-침2 장성동 산51-8	중로3-침2 장성동 694-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침4	12	국지 도로	71	중로2-침4 장성동 산54	중로3-침2 장성동 700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변경	중로	3	침4	12	국지 도로	71	중로2-침4 장성동 산54	중로3-침2 장성동 700-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침5	12	국지 도로	172	중로2-침2 장성동 산51-11	중로2-침3 장성동 산50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중로	3	침6	12	국지 도로	126	중로2-침5 장성동 산57-1	중로3-침5 장성동 산50-1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중로	3	침7	12	국지 도로	126	중로2-침5 장성동 산58	중로3-침5 장성동 산50-8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중로	3	침8	12	국지 도로	130	중로2-침5 장성동 산57-1	소로3-침1 장성동 624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중로	3	침10	12	국지 도로	391	중로2-침3 장성동 산49	중로3-침8 장성동 624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중로	3	침11	12	국지 도로	82	중로2-침3 장성동 산58	중로3-침10 장성동 산58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중로	3	침12	12	국지 도로	69	중로2-침3 장성동 산58	중로3-침10 장성동 산58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중로	3	침13	12	국지 도로	62	중로2-침3 장성동 산57	중로3-침10 장성동 산58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소계			12개노선			1,037						
기정	소로	3	침1	6	국지 도로	289	광로3-3 장성동 산60	장성동 764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소로	3	침2	6	특수 도로	10	광로3-3 장성동 산45	장성동 산45	보행자 전용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소로	3	침3	6	특수 도로	35	대로3-침1 장성동 산47	중로3-침10 장성동 673	보행자 전용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침4	6	특수 도로	34	대로3-침1 장성동 산51-26	중로3-침5 장성동 산51-11	보행자 전용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소로	3	침5	6	특수 도로	34	대로3-침1 장성동 산51-7	중로3-침3 장성동 산51-7	보행자 전용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소로	3	침6	6	특수 도로	34	중로3-침6 장성동 산50-6	중로3-침7 장성동 산58	보행자 전용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소로	3	침7	6	특수 도로	34	중로3-침3 장성동 산58	중로3-침7 장성동 산58	보행자 전용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소로	3	침8	6	특수 도로	10	광로3-3 장성동 산58	중로3-침10 장성동 산58	보행자 전용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소로	3	침9	6	특수 도로	24	중로3-침10 장성동 산57	소로3-침1 장성동 산60	보행자 전용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소로	3	침10	6	특수 도로	34	중로3-침3 장성동 산57	중로3-침8 장성동 산57	보행자 전용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소로	3	침11	6	국지 도로	378	중로2-침1 양덕동 990	중로3-침1 양덕동 962-3	일반 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변경	소로	3	침11	6	국지 도로	378	중로2-침1 장성동 690-1	중로3-침1 장성동 690-3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침12	6	특수 도로	121	중로2-침2 장성동 738	중로3-침14 장성동 753	보행자 전용도로	-	포항5사제4호 2011.05.30	

1-2-1-2. 주차장

□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2,425	-	2,425	-	
변경	침1	장성침촌1주차장	장성동 698-1일원 → 장성동 698-5일원	1,388	-	1,388	포항5사제4호 2011.05.30	
기정	침2	장성침촌2주차장	장성동 산50-5일원	1,037	-	1,037	포항5사제4호 2011.05.30	



1-2-2. 공간시설

1-2-2-1. 공원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개소			23,512	-	23,512	-	
기정	근	장성침촌 근린공원	근린공원	장성동 산51-13일원	10,037	-	10,037	포항시제4호 2011.05.30	
변경	체	장성침촌 체육공원	체육공원	양덕동 964-1일원 → 장성동 690-19 일원	10,957	-	10,957	포항시제4호 2011.05.30	
변경	소1	장성침촌 1소공원	소공원	장성동 698-1일원 → 장성동 698-5 일원	1,286	-	1,286	포항시제4호 2011.05.30	
기정	소2	장성침촌 2소공원	소공원	장성동 752일원	1,232	-	1,232	포항시제4호 2011.05.30	

1-2-2-2. 녹지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6,141	-	6,141	-	
기정	54	녹지	완충 녹지 (도로변)	광로3-5호선기점 ~ 대로3-15호선	6,141	-	6,141	경고제288호 2001.09.25	

1-2-2-3.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6,407	-	6,407		
변경	침1	장성침촌 1공공공지	양덕동 1176일원 → 장성동 690-22 일원	5,526	-	5,526	포항시제4호 2011.05.30	
변경	침2	장성침촌 2공공공지	양덕동 990일원 → 장성동 690-1 일원	881	-	881	포항시제4호 2011.05.30	

## 1-2-3. 공공·문화체육시설

## 1-2-3-1. 학교

 학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27,072	-	27,072		
기정	초	침촌 초등학교	초등 학교	장성동 산51-12일원	13,155	-	13,155	포항도시계획4호 2011.05.30	
기정	중	침촌 중학교	중학교	장성동 산56일원	13,917	-	13,917	포항도시계획4호 2011.05.30	

## 1-2-4. 방재시설

## 1-2-4-1. 유수지

 유수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6,499	-	6,499		
변경	저1	침촌 1저류지	저류 시설	양덕동 925-2일원 → 장성동 690-56일원	3,912	-	3,912	포항도시계획4호 2011.05.30	
기정	저2	침촌 2저류지	저류 시설	장성동 736일원	2,587	-	2,587	포항도시계획4호 2011.05.30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식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식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4개 가구	265,742		265,742	
1	기정 ----- 변경	A1	83,472	양덕동 산222 일원	83,472
				장성동 산222-19 일원	
2	기정	A2	107,575	장성동 산45 일원	107,575
3	기정 ----- 변경	B1	2,473	장성동 694-3 일원	2,473
				장성동 694-6 일원	
4	기정	B2	3,443	장성동 산51-8 일원	3,443
5	기정 ----- 변경 ----- 기정	B3	14,543	B3-① 장성동 698-1일원	1,388
				B3-① 장성동 698-5일원	
				B3-② 장성동 산51-12일원	13,155
6	기정 ----- 변경	B4	2,189	장성동 698-3 일원	2,189
				장성동 698-7 일원	
7	기정	B5	3,163	장성동 산54 일원	3,163
8	기정	B6	2,797	장성동 산51-11 일원	2,797
9	기정	B7	2,780	장성동 산50 일원	2,780
10	기정	B8	2,007	B8-① 장성동 산50-5일원	1,037
				B8-② 장성동 685 일원	970
11	기정	B9	2,007	장성동 산58 일원	2,007
12	기정	B10	2,007	장성동 산50-9 일원	2,007
13	기정	B11	2,000	장성동 산58 일원	2,000
14	기정	B12	13,917	장성동 산56일원	13,917
15	기정	B13	2,040	장성동 산57-6 일원	2,040
16	기정	B14	1,934	장성동 산57 일원	1,934
17	기정	B15	856	장성동 622일원	856
18	기정	B16	3,652	장성동 674 일원	3,652
19	기정	B17	2,976	장성동 산58 일원	2,976

• 본 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므로 환지계획 승인 후 이를 획지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함  
 ※ 단 B1, B2, B6, B7, B16은 500㎡미만 분할금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20	기정	B18	2,524	장성동 산58 일원	2,524	• 본 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므로 환지계획 승인 후 이를 획지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함 ※ 단 B1, B2, B6, B7, B16 은 500㎡미만 분할금지
21	기정	B19	2,079	장성동 산58 일원	2,079	
22	기정	B20	2,020	장성동 산58 일원	2,020	
23	기정	B21	1,902	장성동 산57 일원	1,902	
24	기정	B22	1,386	장성동 산57 일원	1,386	

2-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2-1.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1, A2	용도	권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 시설
			불허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격리병원, 유스호스텔,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 5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50%이하)
		용 적 률		• 30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300%이하)
		층수	최고	• 25층 이하
			최저	-
		배 치		• 배치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동거리 유지
		형태 및 색채		• 경사형 지붕 권장,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 축 선		-

2-2-2. 단독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B1, B2, B4~B7, B8-②, B9~B11, B13~B22	B1, B2, B4~B7, B8-②, B9~B11, B13~B22	용도	권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 생활시설	
			불허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격리병원,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 6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60%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250%이하)	
		층수	최고	• 7층 이하	
			최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 축 선		-	

2-2-3.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주2	B3-①, B8-①	용도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 적 륜			
		층수	최고	• 5층 이하	
			최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	
건 축 선		-			

2-2-4. 학교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초, 중	B2-②, B12	용도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층수	최고	• 7층 이하
			최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 축 선		-

2-2-5. 공원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체, 근 소1, 소2	체, 근 소1, 소2	용도	지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공원, 근린 공원 및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 적 률		
		층수	최고	• 3층 이하
			최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
		건 축 선		-

2-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획지)	계 획 내 용	비 고
-	전 지 역	•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의 투시형담장이나 수목식재 등 자연친화 적인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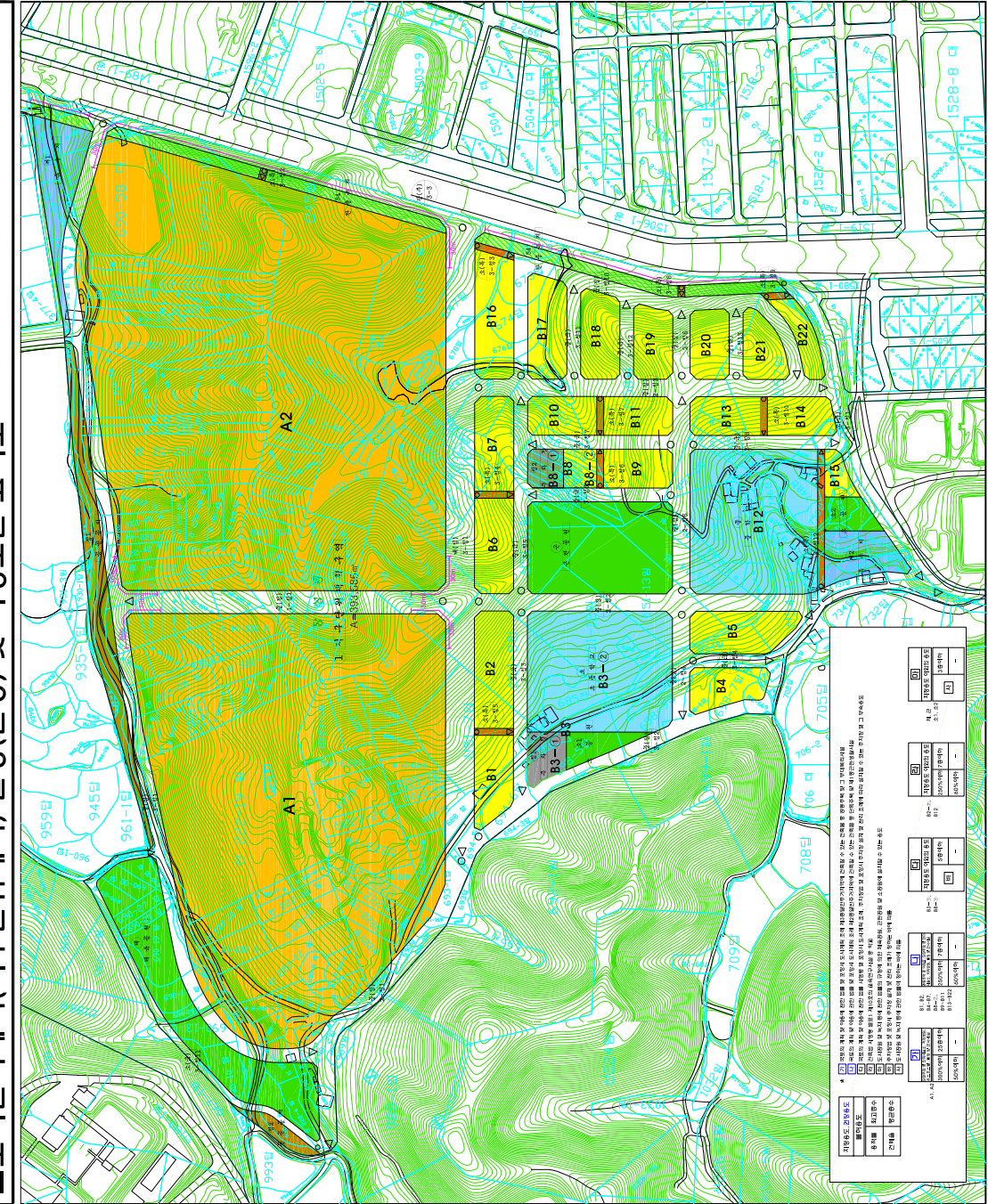
## 3-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3-1-1.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표시 번 호	위치(획지)	계 획 내 용	비 고
-	A1, A2, 완충녹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로3-3호선 완충녹지면 전구간 차량출입 금지구간 지정</li> <li>• 광로3-3호선 및 중로1-침1호선에서 접속하는 도로 교차부(공동주택지면) : 30m</li> </ul>	

※ 첨부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S=1/1,200)  
( 포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에서 열람 가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차장	공원	강충녹지	공공공지	저류지	지방철입불허구간
(Dotted line)	(Yellow)	(Orange)	(Grey)	(Green)	(Light Green)	(Brown)	(Blue)	(Pink)

SCALE : 1 / 1,200

본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작성하고 있다. 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작성하고 있다.

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작성하고 있다. 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작성하고 있다.

구분	지번	면적(㎡)	비고
A1	A1-1	993.0	
	A1-2	993.0	
A2	A2-1	945.5	
	A2-2	945.5	
B1	B1-1	961.1	
	B1-2	961.1	
B2	B2-1	961.1	
	B2-2	961.1	
B3	B3-1	961.1	
	B3-2	961.1	
B4	B4-1	961.1	
	B4-2	961.1	
B5	B5-1	961.1	
	B5-2	961.1	
B6	B6-1	961.1	
	B6-2	961.1	
B7	B7-1	961.1	
	B7-2	961.1	
B8	B8-1	961.1	
	B8-2	961.1	
B9	B9-1	961.1	
	B9-2	961.1	
B10	B10-1	961.1	
	B10-2	961.1	
B11	B11-1	961.1	
	B11-2	961.1	
B12	B12-1	961.1	
	B12-2	961.1	
B13	B13-1	961.1	
	B13-2	961.1	
B14	B14-1	961.1	
	B14-2	961.1	
B15	B15-1	961.1	
	B15-2	961.1	
B16	B16-1	961.1	
	B16-2	961.1	
B17	B17-1	961.1	
	B17-2	961.1	
B18	B18-1	961.1	
	B18-2	961.1	
B19	B19-1	961.1	
	B19-2	961.1	
B20	B20-1	961.1	
	B20-2	961.1	
B21	B21-1	961.1	
	B21-2	961.1	
B22	B22-1	961.1	
	B22-2	961.1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고시 제 2013 - 1호

- 1. 수도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해 수립한 “포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 관계도서는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2013년 0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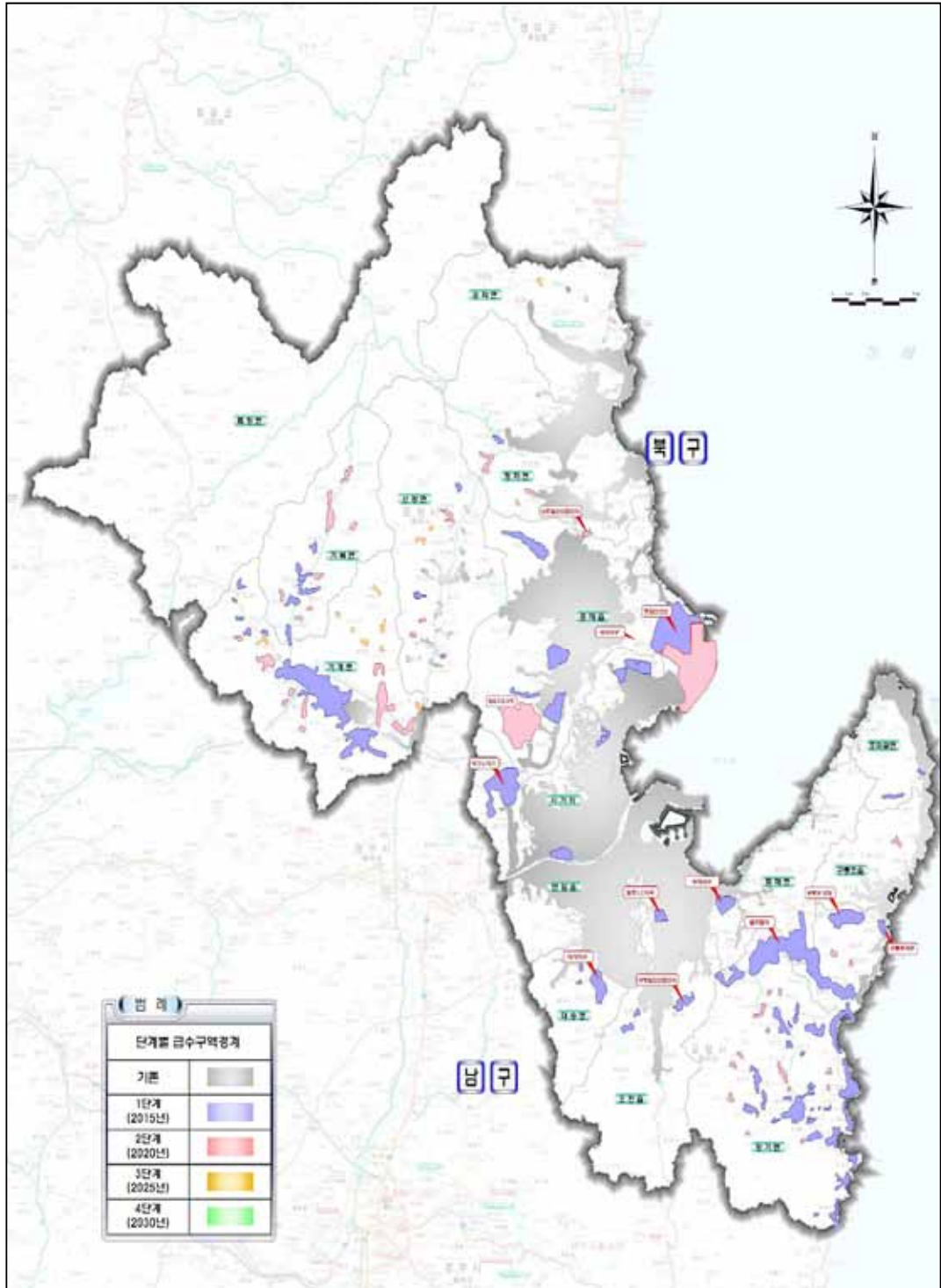
포항시장

다 음

- 1. 계획의 범위
  - 목표연도 : 2030년
  - 계획범위 : 포항시 행정구역 전역
- 2. 계획의 내용
  - 가. 포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기본사항 결정
  - 나. 시설확충 및 개량계획
  - 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계획
  - 라. 상수도 수질 및 수요관리 계획
  - 마. 수도운영 및 관리 개선계획
  - 바. 기술진단 및 재해대책
  - 사.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 3. 장래 계획지표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고
계획인구(인)	569,700	585,760	591,970	596,890	
자연적증감인구	510,940	516,630	522,840	527,760	
사회적증감인구	58,760	69,130	69,130	69,130	
계획급수보급률(%)	97.5	97.9	98.2	98.4	
계획급수인구(인)	555,450	573,290	581,130	587,390	
소비량원단위(lpcd)	310	320	330	340	
유수율(%)	71.0	76.0	81.0	83.0	
침투부하율	1.23	1.23	1.23	1.23	
계획급수원단위(lpcd)					
일평균	432	413	394	389	
일최대	532	508	484	479	
생활용수(정수)	241,300	240,200	232,300	232,100	일평균
	296,400	294,800	284,800	284,600	일최대
생활용수	239,500	236,400	228,500	228,300	일평균
	294,600	291,000	281,000	280,800	일최대
기타용수	1,800	3,800	3,800	3,800	일평균
	1,800	3,800	3,800	3,800	일최대
공업용수(침전수 및 원수)	308,750	330,900	330,900	330,900	
정수	4,900	12,900	12,900	12,900	일최대
침전수	50,850	65,000	65,000	65,000	일최대
원수(포스코 및 연관단지)	253,000	253,000	253,000	253,000	일최대
총계(일최대)	605,150	625,700	615,700	615,500	



4. 시설확충 및 개량계획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시설확충계획	취수시설	·취수보 개량	-	-	
	정수장	·양덕정수장 시설확장 ·남구통합정수장 신설 ·병포정수장 폐쇄 ·공단정수장 →전용 공업 전환	·제2수원지 폐쇄 ·남구통합정수장 증설	·택전정수장 폐쇄 ·유강정수장 폐쇄	-
	배수지	·이동,원동,휘날재,광명산단,블루벨리,구룡포대각,이인,테크노 배수지 신설 ·양덕,빌래배수지 증설	·R&D, 영일만4배수지 신설 ·신광배수지 증설	-	-
	송수	·D=80~700mm ·L=93.17km ·가압장 17개소	·D=400~600mm ·L=19.85km ·가압장 1개소	-	-
	급배수	·D=50~900mm ·L=277.94km ·가압장 13개소	·D=50~1,000mm ·L=131.35km ·가압장 7개소	·D=50~100mm ·L=15.51km ·가압장 3개소	-
시설개량계획	시설물	·갈평정수장 고도처리 도입 ·수처리 공정 및 기계, 전기,계측제어, 건축 시설 등 ·가압장, 배수지 시설 등	·수처리 공정 및 기계, 전기,계측제어, 건축 시설 등 ·가압장, 배수지 시설 등	·수처리 공정 및 기계, 전기,계측제어, 건축 시설 등 ·가압장, 배수지 시설 등	-
	노후관	·D=50~900mm ·L=193.34km	·D=50~900mm ·L=50.38km	·D=50~400mm ·L=13.66km	·D=75~1000mm ·L=5.48km
블록화 구축	·시가지 구역	·시가지 외구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교체 ·물탱크 보호시설 교체 ·염소투입기 설치 ·관정 우물덮개 설치 ·관정 보호시설 ·지하수 원수개발 ·폐공처리 및 시설폐지	·물탱크 교체 ·물탱크 보호시설 교체 ·관정 보호시설 ·폐공처리 ·시설폐지	·물탱크 보호시설 교체 ·관정 보호시설 ·폐공처리 ·시설폐지	·폐공처리 ·시설폐지	

## 5.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고
총사업비	703,323	482,514	164,859	42,336	13,614	
1. 시설확충계획	509,688	386,411	121,103	2,173	-	
2. 시설개량계획	155,115	72,427	30,562	38,992	13,134	
3. 블록화구축	21,600	10,800	10,800	-	-	
4.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7,081	3,037	2,394	1,170	480	

## 6. 기 타

포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세부내용과 관계도서는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 054-270-53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3 - 234호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8

포항시장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유관 기관들과 신속한 지휘·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유관 기관들과 신속한 지휘·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
  - 소방관서의 장
  - 교정시설의 장
  - 보훈관서의 장

- 재향군인회장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3. 관련법령

- 「통합방위법」
- 「민방위기본법」

###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3. 2. 8 ~ 2. 27(20일간)

###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2. 2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번호 054)270-2065, 팩스 054)270-2070, e-mail : sds4119@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포항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대책
3.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대비책
5. 통합 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6.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7.27>

1. 시의회 의장
2. 교육장
3. 군부대 지역사령관
4. 지방검찰청 지청장
5. 국가정보원 출장소장
6. 지방해양항만청장<개정 2009.10.13>
7.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
8. 국군기무부대장
9. 소방관서의 장
10. 교정시설의 장
11. 보훈관서의 장
12.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군부대 작전참모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군부대 예비군담당관
3. 총무담당간사 : 자치행정과장<개정 2003.9.25>
4.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개정 2003.9.25, 2005.3.24>>
5. 심리전담당간사 : 홍보담당관<개정 2003.9.25, 2007.5.31, 2010.01.04>

④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포항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포항시방위협의회  
〈개정 2009.10.13〉
-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포항시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10.13〉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포항시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실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지원
-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 5. 통합 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 6.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반원은 각 분야별 지원반장이 된다.〈개정 2007.5.31〉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7명까지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4.10.5〉

④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취약 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 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물 설치<개정 2004.7.27>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또는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 로프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04.7.27>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